

# 변경내용

##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	펀드코드
대신 퇴직연금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53972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)	BV800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e)	BV798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펀드 등(CF)	BV799

## 2. 주요변경내용

### ① 규약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# ② 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(8.36%→8.04%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# ③ 간이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
## 3. 변경 대상 서류 : 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## 4. 변경시행일 : 2022.02.25.(금)

## 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 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①<생략>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추가>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<생략>	①<좌동>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 ③<좌동>
제 30 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④ 집합투자업자는--<중략>-----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---<중략>-----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 ②<생략>	④ 집합투자업자는--<중략>-----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---<중략>-----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 ②<좌동>
제 32 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 ②<생략>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 ②<좌동>
제 39 조(보수)	①<생략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<이하생략>	①<좌동>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<이하생략>

<p><b>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	<p>① &lt;생략&gt;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         1. &lt;생략&gt;         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<u>신설</u>)           3. ~ 5. &lt;생략&gt;          &lt;이하생략&gt;</p>	<p>① &lt;좌동&gt;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         1. &lt;좌동&gt;         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 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         3. ~ 5. &lt;좌동&gt;          &lt;이하생략&gt;</p>
<p>부칙</p>	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 1 조(시행일)</b> 이 신탁계약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p>

## 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	
-투자비용	업데이트	-	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반영	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<u>총보수</u> (단위 : %) ( <u>신설</u> )	-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<u>총보수 및 비용</u> (단위 : %) ( <u>표</u> ) <u>총보수 ·비용</u>
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업데이트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u>&lt;신설&gt;</u>	<u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 부: X(해당없음)</u>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 자대상 ]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 한 ]	법,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<u>&lt;삭제&gt;</u>
제2부. 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으로 인한 수익 률 변동성 변경	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 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<u>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8.36% 이며</u>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<u>4 등급에</u> 해당되는 <u>보통 위험 수 준의 투자위험</u> 을 지니고 있습니 다.	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구분한 결과 <u>실제 연환 산 표준편차는 8.04% 이며 이</u> 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<u>4등 급에</u> 해당되는 <u>보통 위험 수준 의 투자위험</u> 을 지니고 있습니 다.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	시행령 개정사항 반 영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 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 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

		1,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	1,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
제 2 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업데이트	-	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
제 3 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변경에 따른 업 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 5 부. 3. 나. (2) 수시 공시	자본시장법 개정사 항 반영	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(asset.daishin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 이지와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 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 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 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신설)	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(asset.daishin.com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 이지와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 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 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 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 함한다) 3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 5 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 항	업데이트	-	기준일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## 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-투자비용	업데이트	-	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반영	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<u>총보수</u> (단위 : %) ( <u>신설</u> )	-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<u>총보수 및 비용</u> (단위 : %) ( <u>표</u> ) <u>총보수 ·비용</u>
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